

수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557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55722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2. 24 선고 2020가단400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단체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2. 5. 12.

판결 선고 2022. 6. 1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2. 24. 선고 2020가단40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0. 6.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20. 6. 24. 접수 제289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D의 관리기관이며, 피고는 C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전기제품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2) 원고는 1997. 7. 30. C과 사이에 C이 1997. 7. 30.부터 2000. 7. 30.까지의 기간 중에 E조합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대출금 한도액 20,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위 보증에 기하여 E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3) C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0. 11. 9. E조합에 합계 28,547,0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4) 원고는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10775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1.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 1. 피고는 원고에게 28,575,551원¹⁾을 지급하되, 72회로 분할하여 2015. 12. 31.부터 2021. 10. 31.까지는 매월 말일에 400,000원씩 각 지급하고, 2021. 11. 30.까지는 나머지 잔금 175,551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는 때에는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 전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1항의 금원을 성실히 지급할 경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중 나머지 64,172,175원을 모두 감면해준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C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6. 1. 2.부터 2016. 6. 8.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455,993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된 구상금채권은 원리금 합계 92,291,733원 및 그 중 원금 28,119,558원(= 28,575,551원 - 455,993원)에 대한 2016. 2. 1.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확정채권'이라고 한다)이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는 2019. 12. 24.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을 20,000,000원³⁾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작성한 후, F에게 같은 날 계약금 10,500,000원, 2020. 1. 21. 잔금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한편 피고가 아닌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9. 12. 27. 접수 제59902호로 위 2019.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20. 6. 24. 접수 제28909호로 2020. 6. 23.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확정채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1.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본래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이고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착오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명의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와 F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피고가 F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와 F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 간에 작성되었고, F이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9. 12. 27.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②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으로 그 절차와 원인이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떠한 과정에 의하여 착오로 소유자 명의가 피고가 아닌 C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부족한 점, ③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점, ④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G의 증언은, 증인 G가 피고의 해외사업팀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착오로 마쳐졌다고보다는

당사자들(F, 피고, C)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유효한 등기로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효진

판사이국현

판사김광진

별지

1) 대위변제원금 28,547,038원에 위약금 27,945원, 연체보증료 358원, 보증료 218원을 더한 금액은 28,575,559원인데, 계산 착오로 28,575,551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2) C은 2015. 12. 31.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분할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2016. 1. 31.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2016. 2. 1.부터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단,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에는 계약금이 10,500,000원, 잔금이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